

도 특별지원금 B

道内事業者の皆様へ
道特別支援金
時短・外出自粛等による影響緩和

개요

4월 이후 만연방지중점조치 및 긴급사태조치를 수반한 도의 요청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폭넓은 사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휴업·영업시간단축 등의 협력지원금대상사업자 이외에 국가의 월차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게 경영지속화지원긴급특별대책사업을 통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고, 이 지원금과 별도로 일시금을 마련해 급부합니다.

요건 1

① 시간단축대상 음식점 등과의 거래 업체

※ 농어민 및 음식료품, 일회용 젓가락, 물수건 등 음식업에 제공하는 재화·서비스 공급업체

또는

② 외출·왕래 자제요청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업자

※ 여관, 기념품점, 관광시설, 택시사업자, 미용관계자, 각종 교실, 샵포로 외 지역 및 낮 영업 등으로 이용자 감소 영향을 받은 사업자

요건 2

2021년 4월~2021년 7월 사이 월 매출액이 전년대비 또는 전해 같은달 대비 30~50%미만 감소

※ 매출액을 전년과 비교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**특례조치**도 실시

급부액

중소기업 등 **10만엔**
개인 사업자 등 **5만엔**

신청접수 기간

2021년 **7월 2일**~2022년 **1월 31일**

문의처

홋카이도특별지원금 콜센터 TEL : 011-351-4101

이용시간 8:45~17:30 (평일만) ※10월12일 이후 10월 중에는 토요일도 대응

주 1 : 요건 1의 ①은 시간단축대상 음식점 등 (2021년 4월~7월 사이에 홋카이도지사에 의해 시간단축·휴업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자)과 직·간접 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
주 2 : 요건 1의 ②는 홋카이도내 외출·왕래 자제요청 등에 의한 손님 수 감소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
주 3 : 도 특별지원금 B는 도 특별지원금 A와 도 특별지원금 C의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.

주 4 : 2021년 4월~7월까지 휴업·시간단축 대상이었던 음식점이나 1,000㎡를 초과한 시설 등은 시간단축 등에 대한 협력이나 시간단축지원금 수급과 상관없이 **본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.**

주 5 : 도 특별지원금 B는 **국가의 월차지원금(4~7월분)**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(중복수급불가)

도 특별지원금 대상 이미지

★ <도 특별지원금>에 새롭게 <도 특별지원금C>를 마련합니다.

8월 이후 만연방지조치 등 중점 조치나 긴급사태조치로 인해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도 전역의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휴업이나 시간단축에 대한 협력지원금 혹은 국가의 월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(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달 대비 30~50% 미만 감소)을 위해 새롭게 <도 특별지원금C>를 지원합니다.

	← 매출 50%이상 감소	← 매출 30~50% 미만 감소
2020년도 11~3월의 영향	<p>[국가의 일시지원금]</p> <p>법인상한 60만엔 개인상한 30만엔</p>	<p>국가의 일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분 (국가에 신청하지 않은 분 포함)</p> <p>[도 특별지원금A]</p> <p>법인 20만엔 개인 10만엔</p> <p>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</p>
2021년도 4~7월의 영향	<p>[국가의 월차 지원금 (4~7월분)]</p> <p>법인 상한 20만엔 개인 상한 10만엔</p> <p>접수 종료</p>	<p>[도 특별지원금B]</p> <p>법인 10만엔 개인 5만엔</p> <p>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</p>
2021년도 8월 이후의 영향	<p>[국가의 월차지원금 (8월 이후 분)]</p> <p>법인상한 20만엔 개인상한 10만엔</p> <p>8월분 접수중: 9월 1일~10월 31일 9월분 접수중: 10월 1일~11월 30일 10월분(예정): 원칙, 대상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접수</p>	<p>[도 특별지원금C]</p> <p>법인 20만엔 개인 10만엔</p> <p>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</p>

※ 이 그림은 각 지원금의 대상자를 이미지화한 것으로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는 요망 등에서 확인하세요.

※ 도의 특별지원금 A·B·C는 각각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.

※ 도의 일시지원금과 도의 특별지원금A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.

※ 도의 월차지원금(4~7월분)과 도의 특별지원금B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.

※ 도의 월차지원금(8월 이후분)과 도의 특별지원금C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.